

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 중 “계산한다”를 “계산할 수 있고, 이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 적용 기준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산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한 경과조치) 제33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었거나 계약이 체결되었고,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개산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) 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원가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<u>계산한다</u> .	제33조(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계산할 수 있고,</u> <u>이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 적용 기준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할 수 있다.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 제2항과 같음)